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535

발의연월일: 2025. 5. 16.

발 의 자:김위상・이종배・조지연

박충권 · 김선교 · 이달희

김용태 · 김기현 · 김승수

김재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변림(水邊林)은 하천 인접 지역에 자연적으로 형성되거나 인공적으로 조성된 산림으로, 홍수 조절, 수질 정화, 생물 서식지 제공 등의다양한 기능을 하여왔음. 최근에는 이러한 기능에 더해, 수변림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저장하는 '탄소저장고'로서의 역할이 주목받으면서 수변림은 단순한 녹지 공간을 넘어 기후 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 등 생태적·환경적 측면에서 그 가치가 더욱 강조되고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하천이 주로 이(利)·치수(治水) 중심으로 관리됨에 따라 수변림이 관리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경상남도 합천군 황강 일대의 하천정비사업 과 정에서 4헥타르에 달하는 수변림이 소실된 바 있음.

이에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수변림의 보전과 복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수변림을 하천 관리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제도적으로 보호·관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및 제25조제4항제5호의2신설).

법률 제 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수변림(水邊林)"이라 함은 하천 및 호소(「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호소를 말한다)의 경계 내에 발달한 수목 집단을 말한다.

제25조제4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수변림의 보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하천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라 수변림의 보전 및 복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u><신 설></u>	9. "수변림(水邊林)"이라 함은		
	하천 및 호소(「물환경보전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호		
	소를 말한다)의 경계 내에 발		
	달한 수목 집단을 말한다.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 ~ ③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④ 하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4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 <신 설></u>	5의2. 수변림의 보전 및 복원에		
	<u>관한 사항</u>		
6. · 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